성동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청소행정과 TEL: http://www.sd.go.kr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안내」



받는사람

귀하

번지내 투입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정화조의 청소기한이 아래와 같이 도래되어 알려드리오니 청소예정일 15일전에 반드시 정화조 내부청소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는 하수도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1년에 1회이상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이행시** <u>100만원이하</u>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청소기한:

까지

※ 이전청소일:

- 2. 청소요금 부과기준
 - 기본요금 : 750ℓ(0.75m³)까지 20.310원
 - 초과요금 : 100 ℓ (0.1m³) 초과시 마다 1,450원씩 가산
 - ※ 청소요금은 계기량을 확인후 납부하시고, 영수증은 반드시 5년 동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3. 청소요금 납부: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
- 4. 청소신청 및 접수

5. 부당요금 신고나 기타문의는 성동구청 청소행정과(☎ 바랍니다.)로 연락주시기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는 사용인원에 관계없이 1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성 동 구 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사용인원에 관계없이 1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란?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 분해등 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정화조 청소 시기는?

- 정화조 청소는 사용인원에 관계없이 년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량이 증가할 때에는 청소시기도 빨라집니다.
-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정화조가 재기능을 상실하여 분뇨등이 직접 하수도로 유입되어 한강을 오염시킵니다.
-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정화조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됩니다.
- 기본요금 : 750ℓ(0.75m³)까지 20,310원
- 초과요금 : 100 ℓ (0.1m³) 초과시 마다 1.450원씩 가산
- 야간할증: 주간 청소요금의 7%가 가산됨
- 이런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오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준공, 정화조 용량 변경시
- 정화조 청소 미이행시에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하수도법 제 8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됩니다.

성동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청소행정과 TEL: http://www.sd.go.kr 1 | 3 | 3 | - 7 | 0 | 1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촉구 및 과태료 부과예고」

받는사람

서울옥수우체국

귀하 번지내 투입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정화조는 하수도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1년에 1회이상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정화조 청소안내를 1차 통지하였으나 아직까지 청소(신청)를 하지 않아 촉구하오니 아래기한까지 반드시 정화조 내부청소(신청)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으면 하수도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1. 청소기한:

까지

- 2. 청소요금 부과기준
 - 기본요금 : 750ℓ(0.75㎡) 까지 20.310원
 - 초과요금 : 100 ℓ (0.1m³) 초과시 마다 1.450원씩 가산
 - ※ 청소요금은 계기량을 확인후 납부하시고, 영수증은 반드시 5년 동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3. 청소요금 납부: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
- 4. 청소신청 및 접수

5. 부당요금 신고나 기타문의는 성동구청 청소행정과(☎ 바랍니다.)로 연락주시기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는 사용인원에 관계없이 1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성 동 구 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사용인원에 관계없이 1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란?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 분해등 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정화조 청소 시기는?

- 정화조 청소는 사용인원에 관계없이 년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량이 증가할 때에는 청소시기도 빨라집니다.
-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정화조가 재기능을 상실하여 분뇨등이 직접 하수도로 유입되어 한강을 오염시킵니다.
-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정화조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됩니다.
- 기본요금 : 750ℓ(0.75m³)까지 20,310원
- 초과요금 : 100 ℓ (0.1m³) 초과시 마다 1.450원씩 가산
- 야간할증: 주간 청소요금의 7%가 가산됨
- 이런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오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준공, 정화조 용량 변경시
- 정화조 청소 미이행시에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하수도법 제 8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됩니다.